

## <書評>

# 「韓國家族法研究」

鄭 光 鉉 博士著

서울大學校出版部刊, 1967

### [一]

韓國家族法の 開拓者이며 우리 法學界의 耆宿인 鄭光鉉博士가 停年으로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를 退職함에 즈음하여 韓國家族法에 關한 舊稿와 其間 蒐集하였던 資料를 모아 한 卷에 엮어 「韓國家族法研究」라 이름하여 出刊하였다. 寄贈된 冊子를 손에 들은 筆者는 먼저 本論 852面, 附錄 658面 總 1,510面(菊版)이란 大著作임에 놀랐으며 다음에 冊을 펼쳐 內容을 概觀하고 韓國家族法の 基本이 되는 論說과 資料를 빠짐없이 網羅하였을 뿐만 아니라 參考文獻을 昭詳하게 紹介하여 이 分野를 學習하려는 初學者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뿐더러 專門家에게도 緊한 參考書가 될 수 있는 集大成임을 보고 敬意를 表하였다. 이 나라가 建國한지 月淺하여 法學界가 아직 少年期를 벗어나지 못한 中에도 其間 家族法學界는 研究者가 적어서 이제야 겨우 教科書 몇卷이 나왔을 뿐이므로 設或 熱意를 가지고 家族法을 專攻하려는 젊은 學徒가 있다가도 參考文獻이 漠然하여 中途而廢하는 수가 많아서 研究者의 輩出이 거의 頓絶되어 그 發展이 매우 遲遲함에 筆者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이와같은 好著가 나온 것은 우리 家族法學界의 앞날의 發展에 寄與할 것이므로 매우 多幸한 일이라 생각되어 解放以後 著者의 뒤를 좇아 斯界의 發展에 微力이나마 努力한 筆者로서는 기쁨을 禁할 筈 없다.

### [二]

本著는 本論과 附錄의 두 部分으로 나뉘고 本論은 다시 「家族法史」「家族法研究資料」「現行立法經過와 그 批判」 및 「現行法の 解釋論과 判例研究」 등의 四編으로 되어 있고 附錄에는 「現行民法典의 親族法・相續法の 立法資料」를 담고 끝으로 韓國家族法の 參考文獻을 紹介하였다.

叙上의 區分은 얼핏 보기에는 本論은 韓國家族法에 關한 論說이고 附錄은 資料인 것 같으나 실상은 大體로 보아 本論中の 第一編 「家族法史」만이 著者의 論說이고 本論의 第二編 乃至 第四編 및 附錄은 資料인 것이다. 그리하여 本著는 論說보다는 資料가 많은 部分을 차지

하고 있다. 그것은 著者は 多年間에 亘하여 많은 論文을 發表하여 韓國家族法에 關하여 進取的見解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論文들의 趣旨를 拔粹綜合하여 韓國親族・相續法講義上卷과 新親族・相續法要論을 出版하여 權威있는 解說書로 널리 읽혀지고 있어 本著에서는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解放前에 發表되어 이미 世人이 求讀키 어려운 論文中 基本的인 것(家族法の 法源—1940年 7月 30日 및 同 8月 1日 日字 朝鮮日報所載, 姓氏論—1940年 東光書店版) 또는 解放後의 것으로 法律의 改正 或은 見解의 變更으로 因하여 많은 加筆을 한 論文中 重要한 것(婚姻 및 離婚史, 戶籍制度史)만을 간추리어 넣었으므로 論文이 적어진 것 같으나 그것으로 157面에 達하므로 짧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家族法研究者에게는 先輩의 論文이나 先進諸國의 立法例 또는 그들의 뛰어난 著作等이 參考되는 것은 勿論이겠으나 우리의 民法典親族篇・相續篇은 韓國舊慣에 依한 家族構造를 骨格으로 維持하면서 先進諸國의 家族法の 民主原理를 參酌하여 修正을 加한 折衷立法이기 때문에 現行親族・相續法の 理解를 위하여는 韓國의 舊慣의 沿革과 先進諸國의 家族法の 民主原理를 導入한 經緯等에 關한 適確한 資料를 綿密하게 參照하는 것이 더욱 必要하겠으므로 韓國家族法學의 開拓者인 著者가 그의 學的生活의 棹尾를 裝飾하는 本著에 있어 그러한 資料에 大部分을 割與하여 力點을 둔 것은 當然한 일이며 또한 本著가 後學에게 크게 寄與할 수 있는 所以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 (三)

著者は 本著의 頭篇論文으로 「家族法の 法源」을 썼었다. 이 論文은 李朝時代에서부터 民法典施行前까지의 法源의 概論이다. 解放後 韓國法學徒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現行法이 어떤 것이냐를 찾아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韓國은 舊韓國時代, 日政時代, 美軍政時代 및 大韓民國時代等의 政治的變遷을 거치는 동안 各時代마다 各樣의 立法이 있었고 大韓民國建國後에는 卒蒼間에 法令의 整備가 되지 못하여 各時代의 法令의 死活이 分明치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自由黨末期에 있어 言論彈壓을 위하여 當局이 舊韓末光武年間的 新聞紙法을 活用하는 등의 橫暴가 있기도 하였다. 그런 중에도 親族・相續法에 있어서는 成文法主義의 例外로서 慣習法을 基本法源으로 하고 補充法源으로서 日本民法典의 親族篇・相續篇의 其個條를 依用하였는데(朝鮮民事令第 11條參照), 그 基本法인 慣習法은 本是 高麗末로부터 李朝初에 亘하여 移入된 中國의 宗法制度에 由來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慣習法을 理解하기 위하여는 宗法制度의 把握이 必要하여 禮論과 李朝法典等이 參考되는데 韓日合併後 日政當局은 이른바 慣習調査 또는 判例等을 通하여 실상은 韓國慣習의 本 모습을 陰蔽하고 日本民法典의 親族相續法の 原理를 援用하여 歪曲하는 수가 많았으며 日政末期에는 이른바 創氏令이라고 俗稱되는 것에 依하여 畢竟에는 韓國의 親族・相續法을 日本化함에 이르렀고 解放後 美軍政은 創氏令을 日本植民政策의 法令이라 하여 朝鮮人姓名復舊令으로써 廢止함으로써 日本化되었던 것을 滅殺하였다. 大韓民國의 建國後에는 韓國의 民主憲法의 原理를 活用하여 慣習法の 原理의

封建性を判例로써 是正한 바 있다. 이것이 韓國民法典의 施行으로 因하여 親族相續法이 成文化되기까지의 前段階의 來歷이다. 頭篇論文「家族法の 法源」은 그 來歷의 概觀을 記述한 것인데, 그 오랜 동안의 法源의 變遷史를 簡略하고 要領있게 간추리어 있으므로 一讀하여 大綱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밝히는 바와 같이 現行民法典의 親族相續法은 韓國의 舊慣에 依한 家族構造(即 宗法制度)를 根幹으로 하고 있으므로 現行法の 正確한 把握을 위하여는 宗法制度의 解剖가 必要할 것인데 本著에 있어 民法典의 前史로서 李朝時代의 法源을 論함에 있어 李朝法典編纂史에 치우쳐 李朝의 法典의 各條를 通한 宗法制度의 原理의 明示를 疎略함은 遺憾이라 하겠고, 特히 財産相續制度에 關하여는 經國大典, 大典通編 또는 大典會通의 刑典「私賤條」에 昭詳히 規定되어 있고 그것은 現行法の 財産相續制度보다도 西歐의 子女의 共同均分相續에 近似하여 지금의 眼目으로도 合理的인데 이것에 關하여 全然 言及을 하지 않은 것은 더욱 遺憾이다. 勿論 著者が 宗法制度에 對하여 外面을 한 것에는 筆者에게 斟酌이 간다. 著者は 일찍이 現行民法典의 草案이 公表되었을 때에 韓國家族生活의 現代化를 위하여는 歐美先進諸國의 小家族制를 繼受하고 또한 男女平等의 徹底를 期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며 草案의 韓國舊慣을 基本으로 하고 先進諸國의 家族法の 民主原理를 折衷하는 式의 微溫의인 立法態度를 積極排擊하였는데 現行法이 草案대로 宗法制度를 踏襲한 것이 달갑게 생각되지 않는 心證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現行法이 已往 草案의 態度대로 宗法制度를 骨格삼았음에는 後學을 위하여 宗法制度의 原理를 說明하여야 하는 것은 不可避하지 않았나 筆者에게는 생각된다.

또 한便 이 論文에서 著者は 日政末期의 創氏令에 關하여 相當한 力點을 두고 있다. 日帝의 韓國民族의 抹殺政策에 對한 憤怒가 爆發한 때문이라. 뒤에 所載된 姓氏論(1940年—創氏令이 公布된 해—發表)도 結局은 創氏令에 對한 反潑의 所産이고, 우리의 姓에 對한 唯一한 文獻이기도 하다. 이 部分은 잘 吟味하며 읽으면 日帝의 韓國民族을 抹殺—그들의 이른바 內鮮一體 또는 內鮮同化—하러든 苛酷한 暴舉를 歷歷히 볼 수 있어 日本의 韓國에 있어서의 植民地政策의 斷面을 透視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韓國의 家族制度의 原理와 日本의 그것—日本은 戰後 天皇制度와 家族制度가 서로 關聯하여 戰前 日本의 獨裁體制를 形成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하여 家族制度의 民主化의 促進을 希求하여 日本民法典의 親族篇·相續篇을 改正하여 法律上 家族制度의 原理가 轉換되고 家族生活에도 西歐化가 相當히 進展되었으리라고 믿어지나 아직도 밑바닥에는 日本固有의 家族制度의 原理와 倫理가 日本人의 意識 또는 生活에 隱然히 潛在하고 있을 것도 推測된다—의 差異도 比較할 수 있을 것이다.

家族의 核은 夫婦이다. 따라서 家族法の 中心은 婚姻이므로 著者は 本著에서 「家族法の 法源」의 다음에 「婚姻 및 離婚史」를 실었다. 本稿는 舊法時代에 發刊되어 지금은 絶版한 韓國·親族相續法 上卷中에 所載한 것에 加筆한 것이다. 本稿에 있어 著者は 앞에 婚姻의 一般史를 論하는 中에 婚姻의 諸形態를 紹介하고 다음에 韓國의 婚姻 및 離婚史를 論하였다. 韓

國의 婚姻 및 離婚史에 關하여 멀리 三國時代에서 시작하여 高麗·李朝時代를 거쳐 日政時代까지를 記述하였다. 그것으로 讀者는 三國時代에서 李朝時代까지의 「婚俗」을 通하여 歷代의 婚姻規範과 婚姻에 關한 民俗을 일 수 있는데 特히 李朝時代의 婚姻規範은 現行法の 淵源이므로 讀者의 精讀을 勸하고 싶고 또한 그 民俗은 오늘에도 慣行되고 있기 때문에 一讀의 價値가 있을 것이다. 本稿 끝部分에는 日政時代의 離婚에 關한 判例 및 日本法依用이 많은 面數로 昭詳하게 論述되었는데 그러한 判例나 日本法依用은 韓國社會의 開化로 因하여 女性이 覺醒하여 儒教倫理에 依한 女性의 束縛에서 벗어나려 女權伸張을 主張하는 時流에 따른 措置이라 그 論述은 韓國의 現代離婚法の 成立史일 뿐만아니라 韓國女性史의 한 斷面이기도 하다.

本編의 셋째번에는 「戶籍制度史」가 실려 있다. 現行親族·相續法은 우리 傳來의 家族制度에 따라 家系의 繼承과 家族共同體를 想定하고 있으므로 戶籍法은 家長(戶主)에게 統率되는 家族團體를 單位로 하여 戶籍을 編成하는 制度를 擇하고 있다. 이러한 戶籍制度는 歐美의 小家族制가 家族共同體를 想定하지 않고 身分關係를 夫婦 및 그들의 未成年의 子女間의 法律關係로 限定하여 個人別身分登錄制를 擇한 것과 對比된다. 特히 日政以後로 身分關係에 關하여 前日의 事實主義를 止揚하고 形式(申告)主義를 擇하여 戶籍의 揭載가 身分의 確認을 뜻하므로 戶籍의 完備는 親族·相續法의 運用에 絶對 必要하므로 戶籍法의 많은 研究가 要請되는데 이 分野의 研究가 其間 疎忽하여 불만한 文獻이 없었으니 이 論文은 貴重한 것이라 하겠다. 또 著者는 現代戶籍制度의 前史로 新羅時代로부터 李朝時代의 戶籍制度에 關하여 詳述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高麗와 李朝時代의 法典에 「戶口」條가 規定되어 있어 戶籍制度가 施行되어 있었고 日本에서 發見된 六文書에서 新羅時代에도 戶籍制度가 實施되어 있었던 것이 證明되어 韓國의 戶籍制度는 實로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唐制에서 由來한듯 한데 그 內容을 要領있게 記述하여 法制史에 有效한 資料가 되겠다. 그러나 日政以後 現行까지의 戶籍制度는 身分登錄制인 것에 反하여 李朝時代以前의 戶籍制度는 身分登錄制이라기보다는 賦役, 軍役의 賦課를 위한 基礎調査이거나 또는 中世의 社會階級의 把握維持를 위한 調査이기 때문에 구지 말한다면 今日의 國勢調査에 該當하여 兩者가 本質적으로 相異한 것을 이 論文은 알려주고 있어 興味있다.

끝으로 本論 論稿에 關하여 筆者가 一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現行民法典의 草案이 公表되었을 때에 그것에 關하여 筆者는 著者と 討議한 일이 있다. 그 때에 著者는 草案의 戶主制度의 存置와 男女不平等의 立法態度에 對하여 新란한 批判을 加하며 韓國家族生活의 現代化를 領導하기 위하여는 大膽하게 歐美의 小家族制度를 繼承하는 한便 男女平等의 原理의 徹底를 期하여야 한다고 戶主制度廢置論을 主張하였고 이에 對하여 筆者는 法律은 生活의 反映인 限 지금 우리 社會的·經濟的形便으로 小家族制度로의 轉換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家系繼承이란 倫理가 執念되어 있으므로 戶主制度存置는 不可避하고 다만 우리의 傳來의 家族制度에 內在하고 있는 民主要素를 除去하는 等으로 漸進적으로 家族制度의 改革을 志向하

는 民法草案의 立法態度를 大體로 贊同하여 서로 意見이 對立하였던 것이 回想된다. 그 後 一般輿論도 大體로 保守的이었음인지 民法典은 草案대로 굳혀졌으나 그 理論構成이나 解釋에 있어 著者の 急進的態도와 筆者의 保守的見解는 必然的으로 對立을 免치 못하였다. 그런데 民主主義를 理念으로 하여 建國된 우리나라가 民主主義의 進展이 其間 順坦치 못하여 二次의 革命이 일어나기까지 함에 筆者는 이와같은 民主主義發展이 停滯되는 것은 勿論 韓國社會에 內在하고 있는 經濟的, 社會的諸要因에 基因하는 것이나 그 中에도 舊態依然한 家族生活에서 釀成된 韓國人의 反民主의 性格이 가장 作用한 탓이 아닌가 反省되어 그러한 歪曲된 性格을 是正하는 것이 韓國의 民主主義를 正常하게 發展케 하는 捷徑으로 切感되었고 그것을 위하여 韓國家族生活의 現代化가 必要하고 따라서 韓國家族法의 西歐化로의 轉換이 切實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여 近者에는 筆者도 己往의 著者の 立論에 接近하게 되어서 著者の 先見之明에 感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著者の 「라이프·와·워크」인 本著書에서 韓國家族法과 民主主義에 關한 著者の 卓越한 見解를 表明하여 韓國家族生活의 改革에 對한 方向을 指摘하는 論文이 있지만 않나 하고 期待하면서 冊張을 뒤겼으나 終當 發見하지 못하여 매우 섭섭함을 禁치 못하였다. 老齡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研究生活을 繼續하고 있는 著者에게 그러한 論文을 發表하여 주기를 이 機會에 附託드리고 싶다.

#### 〔四〕

法律도 沿革의 所産으로 歷史的沈澱物인 것이다. 따라서 現行法의 正確한 把握은 그 沿革을 살피 歷史的觀察을 함으로써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그런데 日政以後 韓國이 成文法主義에 들어선 後에도 韓國의 家族法은 몇 차례의 變遷을 거듭하였고 그 대충은 다음과 같다.

① 1912年—1923年 韓國慣習法一元時代 ② 1923年—1940年 慣習法을 基本法源으로 하고 其個事項(婚姻年齡, 裁判上의 離婚, 認知, 親權, 後見, 保佐人, 親族會, 相續의 承認 및 財產의 分離等)에 關하여 日本民法典을 依用함으로써 家族法을 第一次로 現代化한 時代 ③ 1940年—1945年 創氏, 婿養子 및 異姓養子制度等の 日本家族法原理를 導入하여 日本化한 時代 ④ 1945年—1960年 解放後 美軍政, 過渡政府를 거쳐 大韓民國建國後 現行民法典이 施行하기 前까지 韓國家族法의 日本化를 滅殺하는 한便 民主原理를 活用하여 判例으로써 韓國慣習法을 修正한 時代 및 ⑤ 1961年—現在 現行民法典의 施行時代等の 五時代로 區分할 수 있다.

現行民法典은 1959年 2月 制定公布되어 20世紀後半期의 立法에 屬하므로 現代의 民主家族原理를 導入하기는 하였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韓國慣習의 家族構造를 根幹으로 維持할 뿐만 아니라 先行 四時期의 諸制度가 多少씩 沈澱되고 있다. 一例로 認知, 相續의 承認 및 財產의 分離等の 現行法規定은 第二期의 遺產이고 婿養子의 現行規定은 第三期가 남긴 것으로도 斟酌이 간다. 따라서 現行家族法의 正確한 理解는 그 先行의 四時期의 變遷의 자취를

確實하게 把握하는 것이 緊要할 것이다. 本著 本論 第二編 乃至 第四編은 그 四時期의 變遷史의 資料를 提供한 것이다.

韓國의 舊慣은 日政下 全期를 通하여 家族法의 基本의 法源일 뿐만 아니라 現行民法典에 있어서의 家族法의 基本根底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의 調査蒐集과 그 解釋은 韓國 家族法의 基本作用이다. 그것을 위하여 日政當局은 慣習調査報告書 民事慣習回答彙集等を 發刊하여 慣習研究의 重要한 文獻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 日政當局이 蒐集만 하여 놓고 미처 發表하지 못한 것을 著者が 入手하여 前記 慣習集의 續錄으로 收錄한 것이 本論 第二編의 「家族法關係研究資料」의 第一部「慣習法質疑에 對한 中樞院回答」 및 第二部「中樞院調查課 慣習調査資料」 등이 그것이며, 前記의 두 慣習集을 補充하는 重要한 文獻임을 疑心치 않고, 이러한 貴重한 文獻을 용히 入手保管하여 散逸을 免하게 한 著者의 勞苦에 對하여 感謝한다. 그런데 日政이 編纂한 慣習集의 參照에 關하여 筆者가 特히 一言할 것은 첫째 그 慣習은 李朝時代의 支配階級인 士族의 것이니 階級 또는 地方에 따라서는 그것과 相異한 慣習이 許多하였을 것이라는 것(今後 이러한 慣習의 蒐集이 要請되고 그것은 民俗 또는 社會經濟의 貴重한 資料가 될 것이다)이고 둘째로 慣習의 蒐集과 解釋이 日人의 慣習觀 또는 日本法에 依據한 解釋에 依하여 歪曲된 것이 間間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그대로 信賴할 것이 아니라 疑心나는 것은 李朝時代의 法典 其他 우리 先人들의 著作等 原資料에 依하여 確認하여야 할 것이다.

### (五)

本論 第三, 四編 및 附錄은 모두 現行民法典의 家族法에 關한 것으로 本著의 大部分을 占하고 있는데 이 部分은 그 一部를 除外하고는 學界의 部分이 資料에 該當된다.

重要立法에는 大개 立法의 經過와 各條의 參考資料를 添付한 立法理由書가 붙은 것이 通例이다. 그 理由書는 當該法律의 立法趣旨와 各條의 解釋에 緊한 參考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民法典은 法典編纂委員會가 建國後 匆忙中에 立法에 着手하였으나 六·二五事變으로 因하여 一旦 中斷되었다가 收復後 混亂한 政爭 가운데에 慌忙히 立法한 탓인지 理由書가 添付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著者는 本著에 立法理由書에 該當되는 것으로 本論 第三編「親族, 相續編 立法經過와 그 批判」과 附錄「親族, 相續法立法資料」等を 掲載하였다. 「親族, 相續編 立法經過와 그 批判」에는 立法要綱, 草案等의 成立過程, 各議員의 修正案等を 提示하고 要綱 또는 草案에 對한 著者 및 金曾漢教授의 批判을 紹介하고 있고 또한 女性問題研究所를 代辯한 鄭一亨議員의 女性의 權利를 主張한 修正案理由書도 紹介하고 있다. 當時의 草案(政府案)에 對한 代表的인 學問的批判으로서 現行法의 缺陷을 알 수 있는 好資料일 것이고, 그것은今後 現行法의 改正이 提起될 경우에도 改正의 方向과 個所를 指摘하여 줄 수도 있을 것이다.

民法草案이 發表되고 그것이 政府案으로서 國會에 上程되어 審議될 때까지 財產法에 關하

여는 輿論이 別로 없었으나 身分法(親族, 相續編)에 關하여는 意見百出의 輿論이 沸騰하였고 立場을 달리한 修正案도 많이 提出되었다. 아마도 家族生活에 對한 態度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或은 急進, 漸進이기도 하고 或은 保守, 頑固하기도 하여 一樣하지 않고 또한 家族生活은 合理의 追求보다는 固執과 感情이 隨伴하여 各各 各 生活에 對하여 獨善的인 생각을 가져 各 各의 意見을 吐露한데 基因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意見 또는 修正案은 時代錯誤의 인 것이어서 失笑를 禁치 못하는 것조차도 있었다. 그러나 確定된 民法典은 우리나라의 家族生活이 保守的인 基因함인지 保守的인 方向으로 落着이 되었다. 따라서 著者는 附錄으로 要綱, 原案, 政府案(草案) 및 修正案, 國會主催의 各界代表의 公聽會記錄 그리고 國會에서의 審議經過等 一切를 「親族, 相續法立法資料」라 하여 民法親族, 相續編의 起草의 始부터 議決까지의 事情을 如實히 紹介하여서 現行身分法의 立法背景과 態度를 提示하여 現行民法의 理解에 좋은 資料를 提供하고 있다.

## 〔六〕

現行身分法은 叙上의 經路를 거쳐 制定되어 우리나라는 初有의 成文身分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의 立法이라 未熟한 點도 있겠으나 또 한便 舊慣과 先進諸國의 새 原理와를 折衷하였기 때문에 齟齬를 免치 못하여 未備와 矛盾된 것도 적지 않아 어떠한 條文은 解釋이 어려운 것도 不少하였다. 그리하여 筆者는 民法典이 公布되자 親族, 相續編의 各條條를 綿密히 檢討하여 일찍이 1960年 考試界 1,2 號에 「身分法中의 解釋上의 問題點」이라 題하여 難解條文을 指摘하였고, 잇달아 著者도 法曹 1961年 6,7 月號에 「親族・相續法中 解釋上問題點」이라는 論文으로 여러 條文에 疑問을 던졌으며 其外 여러 學者도 解釋이 困難한 點을 指摘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難解條文이 卓越한 解釋을 기다려 自己完成을 期하고 있거니와 著者는 그것을 觸感하고 本著 本論 第四編 「家族法의 解釋論과 判例研究」中 第一部에 「現行法의 解釋問題」라 題하여 여러 難解條文을 골라 諸家의 解釋을 參考하면서 著者 스스로의 解釋의 斷을 내리고 있다. 概觀하니, 明快하고 妥當하여 筆者도 많은 參考가 되어 現行法에 對한 知識을 넓히고 깊게 한 것 같다.

또한 어떠한 法典이든 未備는 免할 筈 없고 法律의 性質上 抽象的인 點을 冒免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補完하고 具體化하는 것은 判例의 重大한 任務이고 이에 法律學의 完成을 위하여 判例研究가 必要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民法典은 施行한지 日淺하여 아직 判例의 蓄積이 없어 아직 그 任務을 다하지 못하여 研究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데 近者 家庭紛糾의 法廷解決이 높은 탓인지 多幸히 身分法의 新判例로서 世人의 耳目을 끌 뿐만 아니라 學問의 으로도 吟味할 價値가 있는 것이 종종 눈에 띄어 반갑게 여기고 있는데 著者는 부지런히 그러한 判例를 골라 同編第二部に 「現行家族法判例研究」라 題하여 多數를 收錄하고 있다. 그것은 教科書의 抽象的인 解說로 어중간히 理解한 것을 明確히 理解하는데 學生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學者들의 法文解釋이나 身分法의 體系構成에 도움을 주는 資料가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이 判例研究를 等閑視하지 않은 著者の 態度는 從來에 或而也 理論을 重視하는 나머지 法學의 實用性을 忘却하는 法學界 弊端에 反省을 주기도 할 것이므로 筆者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叙上으로 鄭光鉉博士의 「라이프·워크」인 「家族法研究」에 對한 書評을 草하였기니와 외람된 點이 없지 않음으로 鄭博士의 寬容을 빌며 앞날에 博士에게 더욱 健康하시며 學問의 收獲도 많으시기를 祈願하여 이 글을 마감하겠다.

<李熙鳳：高麗大學校法科大學教授>